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5. 19 선고 2019가합51388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, 진현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, 최정원

피고1. 유한회사 A

2. B

3. C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

변론 종결2022. 4. 14.

판결 선고2022. 5. 19.

주 문

1. 피고 유한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,205,5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20. 1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, 피고 B은 2020. 1. 17.부터 2022. 5. 1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,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기 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며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- 1) 1. 원고에게, 가. 피고 B은 727,085,567원 및 그 중 683,055,156원에 대하여 2019. 10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나. 피고 유한회사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12,205,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8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5,011,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(이하 '피고 A'이라 한다)은 2014. 3. 31. 피고 A이 주식회사 D(이하 'D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기업일반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원금을 1,445,000,000원으로, 신용보증기간을 2014. 3. 31.부터 2023. 3. 30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(위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).

제3조(보증료 등 납부)

- ② 본인(피고 A)이 보증료 납부기한 내에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내지 않은 보증료에 연율 10%를 곱하여 계산한 지연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한다.

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.5%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.

제10조(상환 범위)

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.

1. 보증채무 이행금액
2.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3.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
4.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
5. 미납한 보증료, 지연보증료, 위약금
6.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
7. 대위변제 수수료

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.

2. 채권의 집행보전(해지 포함),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

③ 제1항과 제2항의 "원고가 정하는 율"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,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한다.

제12조(변제 등의 총당순서)

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, 보증료, 보증채무 이행금, 대위변제 수수료, 손해금, 위약금,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한다.

②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연대보증인)

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7조(대위담보권)

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로부터 대위권자로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.

나.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

1) 원고는 2014. 3. 31. D은행에 '보증금액: 1,445,000,000원, 피보증인: 피고 A, 보증기한: 2023. 3. 30., 대출예정금액: 1,700,000,000원'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피고 A은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1,70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2) D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. 3. 31. 별지 2.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'채권최고액 2,04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A, 근저당권자 D은행'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, 2014. 9. 19. 별지 2.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2.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장재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(이하 별지 2.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및 기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, 그 무렵 위 보증금액 1,445,000,000원 중 722,500,000원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.

3) 피고 A은 2016. 9. 30. '사업장 권리침해'의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17. 3. 30.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(이하 '이 사건 보증사고'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4) 원고는 2019. 10. 23.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 677,705,000원과 이자 5,350,156원²⁾의 합계 683,055,1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2019. 10. 25. 위 확정채권 일부

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 B의 처분행위

피고 B와 피고 C은 2016. 8. 29.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'피고 B이 위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'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배당

1) 원고는 2021. 4. 1. 별지 2. 목록 기재 각 토지3) 및 기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2021. 4. 5. 위 각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(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), 그에 따른 경매절차4)가 진행되었다.

2)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인 2021. 8. 19.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2,481,508,871원 중 원고에게 777,833,452원[= 위 대위변제금 683,055,156원 + 이자 94,778,296원, 배당비율 100%]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, 그 배당표에 따라 원고에게 위 777,833,452원(이하 '이 사건 배당금'이라 한다)이 배당되었다.

3) 위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.

① 대위변제금 중 잔액 654,276,508원(= 위 대위변제금 683,055,156원 - 2020. 11. 2. 변제금액 28,778,648원)

②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8,027,831원(= 56,440,941원5) + 41,586,890원6))

③ 채권보전비용 2,727,930원

④ 위약금 35,006,690원(= 32,043,360원7) + 2,963,330원8))

⑤ 합계 790,038,959원(= ① 654,276,508원 + ② 98,027,831원 + ③ 2,727,930원 + ④ 35,006,690원)

[인정 근거]○ 피고 A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)

○ 피고 B, C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배당금 777,833,452원이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액 합계 위 790,038,959원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, 위 777,833,452원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 및 민법 제479조, 제477조에 정해진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채권보전비용 2,727,930원, 대위변제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98,027,831원, 대위변제액 중 잔액 654,276,508원, 위약금 35,006,690원 중 22,801,180원9)의 각 변제에 순차로 충당되고, 그 결과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채권은 위약금 12,205,510원(= 790,038,959원 - 2,727,930원 - 98,027,831원 - 654,276,508원 - 22,801,18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.

따라서 원고에게, 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로서 위 12,205,51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2)항에서 보는 이 사건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. 1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10) ②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2,205,51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2)항에서 보는 이 사건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. 1. 17.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5. 19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한편, 원고는 피고 A, B에 대하여 위 12,205,51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. 10. 8.부터 이 사건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.

살피건대, 위 위약금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(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도 위 위약금 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) 그 채무자인 피고 A, B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, 원고는 위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A, B에 대한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A, B에

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B의 주장¹¹ 피고 B과 I은 2016. 9. 12. "① 피고 B이 I에게 피고 A의 지분을 양도하고, ② I은 피고 B이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대보증한 피고 A의 금융 채무에 관한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"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I에게 피고 A에 관한 지분 및 경영권을 이전하였으므로,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2) 판단 가)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B이 2016. 9. 12. I에게 피고 A에 관한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, I은 위 계약에서 피고 B이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대보증한 피고 A의 금융 채무에 관한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.

나) 그러나 위 계약은 피고 B과 I이 약정 당사자로서 "피고 B이 연대보증한 피고 A의 금융 채무에 관한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한다"는 취지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,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,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, 피고 C은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위약금 상당액인 12,205,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관련 법리

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

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.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,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,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다. 구체적 판단

1) 갑 제4호증의 기재, 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(2020. 5. 20.자), 감정인 J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. 5. 19. '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B, 근저당권자 D은행'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선행 근저당권'이라 한다)가 마쳐졌고, 같은 날 선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피고 C 소유의 별지 3.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② 2014. 5. 27. 피고 C 소유의 별지 3.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선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된 사실,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. 8. 29.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18,184,600원이었고, ④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62,000,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2)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, 선행 근저당권에 관한 물상보증인인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성민

판사강경민

판사김은지

별지

1) 원고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소제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, 그에 따라 2021. 11. 1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, 피고 B, C이 위 청구취지 감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(위 피고들의 2021. 11. 17.자 준비서면 참조),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는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를 기재한다. 소송비용 부담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였다.

2) $5,350,156\text{원} = 677,705,000\text{원} \times 3.39\% \times 85/365$ (2019. 7. 30.부터 2019. 10. 22.까지);
원 미만은 버림, 이하 같음

3) 별지 2.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토지는 2015. 11. 10. 전라북도 정읍시 F 임야 $3,356\text{m}^2$ 로 등록전환 되었고, 같은 날 전라북도 정읍시 F 임야 $1,260\text{m}^2$ 와 G 임야 $2,096\text{m}^2$ 로 분할되었으며, 위 분할된 토지들 중 전라북도 정읍시 G 임야 $2,096\text{m}^2$ 에 대하여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.

4) 위 각 토지 및 기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H 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.

5) 위 대위변제금 683,055,156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. 10. 23.부터 위 28,778,648원 변제일인 2020. 11. 2.까지(377일)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(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총일수 방식으로 산정, 이하 같음). $56,440,941\text{원} = 683,055,156\text{원} \times 0.08 \times 377/365$

6) ① 대위변제금 중 잔액 654,276,508원에 대한 위 2020. 11. 2. 변제일 다음 날인 2020. 11. 3.부터 위 배당기일인 2021. 8. 19.까지(290일)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.

$41,586,890\text{원} = 654,276,508\text{원} \times 0.08 \times 290/365$

7) 미이행 보증금액 722,500,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. 3. 31.부터 2019. 7. 30.까지(852일) 연 1.9%(= 보증료율 1.4% + 가산 요율 0.5%)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(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 참조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).

$32,043,369\text{원} = 722,500,000\text{원} \times 0.019 \times 852/365$

8) 보증잔액 677,705,000원에 대한 2019. 7. 31.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9. 10. 22.까지(84일) 위 연 1.9%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(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).

$2,963,334\text{원} = 677,705,000\text{원} \times 0.019 \times 84/365$

9) 앞의 대위변제액 중 잔액의 변제에까지 충당되고 남은 배당금은 22,801,183원(= 777,833,452원 - 2,727,930원 - 98,027,831원 - 654,276,508원)이나, 원고가 위약금의 산정과 위약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 모두 10원 미만을 버리고 산정하였고(2021. 11. 1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, 4쪽), 원고가 지급받을 위약금 산정에 있어 버린 금액이 더 커서 두 금액 모두 10원 미만을 버리고 산정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금액 모두 10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다.

10)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2020. 1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. 1. 16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. 5. 19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.

11) 피고 B의 2021. 7. 9.자 답변서 참조